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

발의자 : 김은영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2조)

나.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8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규칙안은

「지방자치법」('22.1.13. 시행)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임면·교육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함에 따라,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